

「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24일

나. 발 의 자: 이정희, 강승수, 김근한, 김낙관, 김민성, 김영길, 김영태, 김원섭, 김재우, 김정도, 박교상, 박세채, 소진혁, 신용하, 이명희, 이상호, 이지연, 장미경, 장세구, 정지원, 추은희, 허민근 의원(22명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6월 4일

제27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정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자연·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창업가로 육성·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, 위탁(안 제4조~제6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, 포상(안 제7조~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9조
 -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기 동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
지역가치창업가¹⁾(로컬크리에이터)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
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1) 로컬크리에이터 : 지역을 뜻하는 로컬(Local)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(Creator)의 합성어로 지역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

- 안 제5조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(구미시 송정대로 120, 구미상공회의소 4층)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(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,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사업 등) 창구의 일원화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행 업무 명확화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

-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6조(위탁)의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

6. 소수의견의 요지:

-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야 함
-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 기능에 포함시켜야 함.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